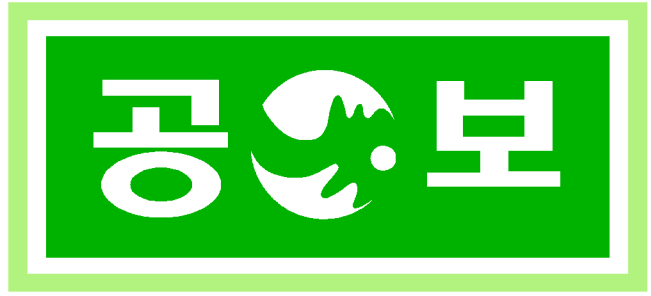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기 관 의 장



제 957 호 2015. 7. 13. (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19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0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2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627호[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8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11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호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토지구획정리지구 93B2L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 설치 (전력 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호계동 936-1번지

나. 면적

- 일시 : 4㎡

- 영구 : 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일시 : 착공일로부터 1일간

나. 영구 : 2015. 7. 13.~201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수동5길 17-5(호계동)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78 4L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동 17-5(호계동)	2015-07-13	수동마을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부여하였다	2013-12-30	
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7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18(화봉동)	2015-07-13	통성마을과솔밭마을을관하여서정이라불리어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23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16(화봉동)	2015-07-13	통성마을과솔밭마을을관하여서정이라불리어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24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3길 11(화봉동)	2015-07-13	통성마을과솔밭마을을관하여서정이라불리어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2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5길 8(화봉동)	2015-07-13	통성마을과솔밭마을을관하여서정이라불리어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6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532-1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당사동)	2015-07-13	아름마을사업이진행중인곳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지구 21B 9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5길 7(진장동)	2015-07-13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주소신시민이면부구나신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04-12-07	
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34-12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9길 16(화봉동)	2015-07-13	사림이사는터전을관하는지역이며화광지역의대표적인옛지명이므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9	울산광역시 북구 오계동 674-1	울산광역시 북구 오계2길 15(오계동)	2015-07-13	오계시장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8-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3동3길 11(중산동)	2015-07-13	중산신안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15-02-02	
11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하지구 45B 7L	울산광역시 북구 산해중앙1로 24(산해동)	2015-07-13	산해지구중앙을지나는도로라는의미므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14-05-07	
1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지구 58-1B 5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1(진장동)	2015-07-13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주소신시민이면부구나신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04-12-27	
1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지구 138 2L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5길 19-7(중산동)	2015-07-13	법정중앙상사용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13-12-30	
1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지구 9B 12L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4길 10(중산동)	2015-07-13	법정중앙상사용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13-12-30	
15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4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45(신명동)	2015-07-13	기촌자연마을인신명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16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5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43(신명동)	2015-07-13	기촌자연마을인신명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17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6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41(신명동)	2015-07-13	기촌자연마을인신명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18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7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39(신명동)	2015-07-13	기촌자연마을인신명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19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499-1, 500-3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1길 46(창평동)	2015-07-13	기촌자연마을인창평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20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33-1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928(당사동)	2015-07-13	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로명부여하였다.	2009-08-2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12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사청3길 11(화봉동)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3길 11(화봉동)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7	2015-07-13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5길 10(화봉동)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7	2015-07-13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2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2로 38-15(호계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호계5길 99	호수2로 38-15	2015. 7. 13	호수지구를 차는 도로분야로 도로명을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5 - 627호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 등에 의거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대상 문화재 : 시지정 문화재 어물동 마에여래좌상 외 13개소(붙임 참조)

2. 허용기준 작성 목적

- 가. 「문화재보호법」 제13조4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나.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 하고
- 다.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행정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제고

3. 인·허가 절차

- 가. 허용기준 이내 건설공사 : 문화체육과 협의 후 즉시처리
- 나. 허용기준 초과 건설공사 : 울산광역시에 현상변경 허가 득하여 시행

4. 공고기간 : 2015. 7. 8. ~2015. 7. 22.(15일간)

5. 의견제출 및 접수(의견서양식 불임 참조)

- 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람, 도면 열람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41-7333)로 연락바랍니다.

- 불임 1. 대상 시지정 문화재
-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3.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대상 시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보호구역 (㎡)
	구분	번호				
1	유형 문화재	6	어물동 마에여래좌상	어물동 산122 일원	'97.10.09.	13,258
2	기념물	9	중산동 고분군	중산동 616-1 일원	'97.10.09	21,381
3		13	우가산 유포봉수대	당산동 산171, 230 일원	'98.10.19	8,262
4		30	상안동 지석묘	상안동 223-1 일원	'00.12.09.	1,055.6
5		31	창평동 지석묘군	창평동 7, 산45-2	'00.12.09.	2,124.1
6		38	곽암	강동동 판지마을 해수면	'01.12.20	503
7		40	달천철장	달천동 1-7 일원	'03.04.24	68,292.5
8		41	중산동 취락유적	중산동 656-1 일원	'03.04.24	15,663
9		42	강동 화암 주상절리	산하동 952-1 일원	'03.04.24	7,681.6
10		44	대안동 최부리터	대안동 산177	'06.01.23	1,660.8
11		45	매곡동 생활유적	매곡동 351-10	'07.11.22	21,120
12		문화재 자료	5	박상진의사 생가	송정동 355	'97.10.09.
13	9		신흥사 구 대웅전	대안동 739	'98.10.19.	5,196.9

[붙임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14개소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연번	지 정 별		문화재명	구 역	비 고
	구 분	번호			
1	유형 문화재	6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I 구역, II구역	
2	기념물	9	중산동 고분군	I 구역, II구역	
3		13	우가산 유포봉수대	I 구역, II구역, III구역, IV구역, IV-1구역	
4		30	상안동 지석묘	I 구역, II구역, IV구역	
5		31	창평동 지석묘군	I 구역, II구역,	
6		38	곽암	I 구역, II구역	
7		40	달천철장	I 구역, IV구역	
8		41	중산동 취락유적	I 구역, II구역	
9		42	강동 화암 주상절리	I 구역, II구역, IV구역	
10		44	대안동 쇠부리터	I 구역, II구역	
11		45	매곡동 생활유적	I 구역, II구역, III구역	
12		문화재 자료	5	박상진의사 생가	IV구역
13	9		신흥사 구 대웅전	I 구역, II구역	

○ 구역에 따른 허용 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공 통 사 항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 보존 ○ 신축불가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보수, 개축, 재축은 기존규모, 기존위치 내에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지역(보호구역포함)은 시도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 공익을 위한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의 신축, 증축, 개축 허용 ○ 평슬라브:8m이하, 경사지붕(3/10 이상) : 12m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연면적, 최고 높이 범위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제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의 신축, 증축, 개축 허용 ○ 평슬라브 : 15m이하, 경사지붕(3/10이상) : 20m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연면적, 최고 높이 범위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제4-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처리 	

